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566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(C호) 56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9. 25.부터 위 선내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보원

별지